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10100614]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1. 12. 20]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3. 06. 16]

www.alpha.co.kr
alpha@alpha.co.kr

알 파

정 보 공 개 서

알파(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알파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번지

대표전화번호 : 02-1544-0096

대표팩스번호 : 02-717-2173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체인지원본부 02-3788-947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알파 주식회사	알 파 외 1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7. 7. 10	1987.08.01	이종호	02-1544-0096	02-717-2173
	법인등록번호	11011-0537609	사업자등록번호	106-81-2749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종호	알파 외 1	서울시 용산구 용산구 청파로 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호	02-1544-0096	02-717-217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 사	김정숙	알파 외 1	서울시 용산구 용산구 청파로 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호	02-1544-0096	02-717-217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이동재	알파 외 1	서울시 용산구 용산구 청파로 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호	02-1544-0096	02-717-217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 사	이호선	알파 외 1	서울시 용산구 용산구 청파로 56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종호	02-1544-0096	02-717-217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간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 한 경우도 포함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알 파	Alpha는 단어적 의미로 가장 중요한 수(秀), 「처음」을 뜻하며, 상품의 품질에서 고객 서비스까지 최고를 추구하고,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세계속의 알파를 지향함으로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고객의 사랑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협력(協力)창의(創意)개척(開拓)의 경영이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상 호	알파 OO점	지역명으로 상호 협의하여 선정
상표(서비스표)		주요 사용 CI 표지
광 고		PB 상품 브랜드 표지
그 밖의 영업표지		알파몰 홍보 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별첨 참조]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49,128,451	30,706,588	18,421,863	101,450,094	3,250,591	2,944,643

2022년	52,186,630	31,404,798	20,781,832	99,745,413	2,611,286	2,359,969
2023년	54,190,645	32,494,197	21,696,448	95,825,654	1,198,982	914,616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종호	대표이사	2021. 4.01~ 현재.	알파(주)	회사 업무 총괄
	김정숙	감 사	1990. 3.16~ 현재.	알파(주)	감사 업무
	이동재	이 사	2021. 4.01~ 현재.	알파(주)	기획 업무
	이호선	이 사	2009. 5.11~ 현재.	알파(주)	기획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19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알파(주)	가맹사업 경영	2013.08.5~현재	오피스알파(등록번호:20120100238) 라는 문구전문점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상표사용	2004.04.12출원 2005.05.19등록	출원41-2004-0008121 등록41-0116547-0000	알파주식회사	2025.05.19
	상표사용	2012.07.26출원 2013.12.03등록	출원41-2012-0025455 등록41-0274613-0000	알파주식회사	2033.12.03
	상표사용	2014.03.20출원 2016.05.27등록	출원41-2014-0010700 등록41-0360586-0000	알파주식회사	2026.05.27
	상표사용	2014.12.12출원 2016.10.27등록	출원41-2014-0051837 등록41-0374751-0000	알파주식회사	2026.10.27
	상표사용	2014.04.07출원 2014.12.12등록	출원40-2014-0022958 등록40-1075342-0000	알파주식회사	2024.12.12
	상표사용	2015.02.02출원 2015.12.16등록	출원40-2015-0007669 등록40-1149198-0000	알파주식회사	2025.12.16
	상표사용	2009.03.10출원 2010.07.23등록	출원41-2009-0004850 등록41-0199322-0000	알파주식회사	2030.07.23
	상표사용	2006.05.15출원 2007.06.28등록	출원40-2006-0025783 등록40-0715095-0000	알파주식회사	2027.06.28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알파] 가맹사업 현황

1. [알파]을 시작한 날: 1989년 12월 1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71년 4월 5일)

2. [알파]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알파주식회사	알파	이 종 호	2021.04.01.~ 현재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알파	대분류	소분류
	기타도소매	문구

4.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알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60	658	2	661	659	2	643	641	2
서울	159	157	2	156	154	2	149	147	2
부산	16	16	-	16	16	-	15	15	
대구	6	6	-	7	7	-	6	6	
인천	27	27	-	25	25	-	25	25	
광주	26	26	-	25	25	-	25	25	
대전	14	14	-	15	15	-	14	14	
울산	7	7	-	7	7	-	7	7	
경기	180	180	-	183	183	-	174	174	
강원	25	25	-	25	25	-	25	25	
충북	21	21	-	22	22	-	22	22	
충남	30	30	-	29	29	-	29	29	
전북	17	17	-	19	19	-	19	19	
전남	35	35	-	37	37	-	37	37	
경북	35	35	-	36	36	-	34	34	
경남	46	46	-	43	43	-	46	46	
제주	10	10	-	10	10	-	10	10	
세종	6	6	-	6	6	-	6	6	

5 최근 3년간 [알파]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661	14	17		14	658
2022년	658	21	20		13	659
2023년	659	14	32		10	641

6. [알파]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알파(주)	오피스알파	문구전문점	40/1	40/1	4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알파]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출수
		연간 평균 매출액	평당 평균	상한	평당 상한	하한	평당 하한	
전체	641	428,437	6,989	3,304,188	75,466	6	-	630곳
서울	147	402,222	7,782	3,304,188	62,834	48	-	145곳
부산	15	402,445	4,344	2,837,063	12,864	11,136	222	14곳
대구	6	483,864	7,406	1,066,520	12,567	12,832	256	6곳
인천	25	460,726	8,908	1,509,320	75,466	61,031	1,711	25곳
광주	25	503,633	6,510	1,686,339	37,474	6	-	25곳
대전	14	306,642	3,283	727,595	16,852	41,497	927	13곳
울산	7	492,150	7,993	938,259	20,850	37,398	813	7곳
경기	174	409,486	8,163	2,703,028	59,170	4,253	151	171곳
강원	25	359,496	6,302	1,534,248	22,242	1,164	11	25곳
충북	22	466,817	7,584	2,941,965	36,774	13,747	305	22곳
충남	29	465,096	7,756	1,271,659	63,582	2,640	66	28곳
전북	19	432,274	4,959	1,736,204	11,696	88,709	443	18곳
전남	37	414,387	5,897	1,864,170	25,589	65	1	37곳
경북	34	431,129	5,748	1,343,645	16,324	2,045	29	33곳
경남	46	509,210	5,887	1,362,603	34,631	61,867	631	45곳

제주	10	521,208	7,897	953,196	16,376	291,150	3,808	10곳
세종	6	624,329	11,283	844,175	30,944	21,005	262	6곳

당사는 포스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위 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개월수가 6개월 미만이거나 휴업 상태인 가맹점은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특성상 독점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로 유통이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본사 매입의존도는 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물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매장에서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하여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음에 이는 정확한 가맹점의 매출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체인점의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입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 체인지원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알파]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641개	4,34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알파]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경기,인천,충청,경상,전라,제주,강원	중부물류	대전시 동구 대전로906번길 74			
	대표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종호	1544-0096		641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체결권한	가맹금수령권한	
	직 영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알파와

오피스알파 2개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한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비공개비공개	380,987	380,987	－	
광고	비공개		220,549	220,549	－	
판촉	비공개		160,438	160,438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중 업무 편리한 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우체국	예금사업팀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1588-1900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1599-1114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우체국]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알파(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 해당사항 없음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 해 당 사 항 없 음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 해 당 사 항 없 음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알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유인문구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사유	비고
가맹비 (최초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폐업 해지 등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 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 로 전환) 부가세 포함.

나)무인문구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사유	비고
가맹비 (최초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폐업 해지 등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 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 로 전환) 부가세 포함.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유인문구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	영업표지 철거 후	계약만료 후 계약미이행에 따른 비용 상계 후 반환	부가세 없음

나) 무인문구점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없음	없음	부가세 없음

* 담보가 추가 필요시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기준금액:5천만원)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인문구점

(단위: 천원)

구 분	금액(단위:천원)	비 고
합 계	7,500	
가맹비(최초가입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 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나) 무인문구점

(단위: 천원)

구 분	금액(단위:천원)	비 고
합 계	5,500	

가맹비(최초가입비)	5,5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 보증금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유인문구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지급 기한	비고
총 계			[169,500] (3.3㎡ 당 5,650)				30평 기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협력업체 (V-1-1)- 가).참조)	42,900	(3.3㎡ 당 1,430)	개별 계약	해당업체 계약내용 에 따름	개별업체 지급
	철재매대						
	간판						
	POP						
초도물품 비용		알파(주)	90,000 (3.3㎡ 당 3,000)		개별 계약	물품수령 및 검수 후 즉시	상품교환 가능
POS	장비설치비*	알파(주)	1대당 3,600		계약시	설치 전	모바일 장비포함, 타사의 POS를 사용할 경우 교육시작전까지 설치교육비 99만원만 부담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차량 및 비품	33,000		개별 계약	"	추정

나) 무인문구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지급 기한	비고
총 계			[35,900] (3.3㎡ 당 3,590)				10평 기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협력업체 (V-1-1)- 가).참조)	11,600	(3.3㎡ 당 1,160)	개별 계약	해당업체 계약내용 에 따름	개별업체 지급
	철재매대						
	간판,자동문						

	냉난방기, 음향시설					
초도물품 비용		알파(주)	18,000 (3.3㎡당 1,800)	개별 계약	물품수령 및 검수 후 즉시	상품교환 가능
키오스크	장비설치비*	알파(주)	1대당 4,900	계약시	설치 전	복합형(현금, 카드), 카드형 으로 구분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협력업체	1,400	개별 계약	”	추정

* 장비설치비 : 장비 구입 및 설치교육비가 포함된 금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3.3㎡당 금액의 산정은 기준 면적을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르며, 품목에 따라 면적과는 성질상 비례하지 않아서 실제 면적과는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의 선정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가맹점 사업자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알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귀하는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품대금	가맹본부	해당 금액	다음 월 25일	상품대금	본사귀속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부담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 시 반환	본사귀속	교육 필요시 가맹점 청구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판촉 활동 참조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 시 반환	본사귀속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 분담		미 시행 시 반환	본사귀속	
점포환경 개선비용	계약 상대방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개별 청구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지연 이자	상대방	연 6%	개별 청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가맹운영비	가맹본부	월 165	매월	후불형식 반환불가		
POS 유지보수비	가맹본부	월 88	매월	영업 개시 이전 계약해지		모바일 사용시 월 55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이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이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위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동의하면 점포이전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

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
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
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 할
수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
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당사가 운영하는 [알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가 [알파(주)]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알파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양수 시에는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최초 가맹비의 일부
금이백이십만원(₩2,200,000원)(VAT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2,000,000원, 무인문구점의 경
우 해당없음), POS설치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을 원할 경우, 신규가
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최초가맹금 (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및 POS설치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

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 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알파]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의 품목 중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거래를 강제합니다.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품목별 직전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소매업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오피스 사무용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디지털 전산용품			
학용 학습용품			
화방 디자인용품			
생활용품			
기타 상권에 맞는 상품			

※ 매장 재고의 80%이상을 당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재고 비율은 현장 상권에 따라 조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

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유해상품(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상기 1)의 상품 용역	포스나 개별적으로 통지함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사무용품, 전사용품, 학습용품, 화방,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종	알파, 오피스알파	-
--	-----------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영업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1.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300M 2. 백화점, 쇼핑몰, 극장 등의 집합매장 내, 역세권(환승역 우선 적용),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4천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기타 지역적 특성에 의한 영업지역은 1.과 별도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당사는 아래 4가지 형태 유통사업방식에 의한 판매를 별개로 보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라도 아래와 같은 유통사업방식은 가능합니다.

-

① “협력점”이라 함은 일반 문구 도소매업을 하는 유통사업자로서 당사의 상품을 공급받지만 가맹점과 차별하여 가격 및 영업지원 등에 관한 혜택이 없는 유통사업자를 말한다.

② “MRO”, “B2B”라 함은 당사의 법인영업팀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개발된 최종 소비처로 전국에 산재 될 수 있으며, 당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하는 고객사를 말한다.

③ “오픈마켓소비자”라 함은 당사가 판매자로 등록한 오픈마켓(예:옥션, 인터파크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당사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는 최종 실소비자를 말한다.

④ “온라인소비자”라 함은 당사의 온라인 웹사이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여 당사로부터 직접 물류를 배송받는 최종 실소비자를 말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해당사항 없음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
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1	협력점	코모스유통(주)/본점사용*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	협력점	만안구청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	협력점	카피프라자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	협력점	홍제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	협력점	테헤란로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	협력점	문구스토어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	협력점	중앙문고(구:여주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	협력점	알파문구카피센터(구:동탄솔빛나루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	협력점	여수대성종합상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	협력점	망원점(망원로)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	협력점	청강대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	협력점	배명문구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	협력점	후평점교대영업소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	협력점	사용중지/수원경기대점/2호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	협력점	(주)창성제일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6	협력점	(주)제이케이비즈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7	협력점	삼화상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8	협력점	(주)동진씨엠에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9	협력점	주식회사 전산프라자(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0	협력점	(주)이지큐브넷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1	협력점	시스몰(주)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2	협력점	불광문고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3	협력점	드림디포/송산마도점(구:동탄신도시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4	협력점	플러스문구점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5	협력점	선일상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6	협력점	사용중지/수정문화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7	협력점	삼화/선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8	협력점	(주)경인문고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9	협력점	국제문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0	협력점	대전한국문구도매상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1	협력점	드림디포/목동점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2	협력점	통큰따따구리/동부이촌점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3	협력점	대림문구교동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4	협력점	모닝/등촌2점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5	협력점	문구랜드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6	협력점	고대점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7	협력점	세종로점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8	협력점	코모스유통(주)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9	협력점	망원문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0	협력점	오피시아문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1	협력점	주식회사에스닷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2	협력점	사용중지/오피사무용품점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3	협력점	문구센타지필목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4	협력점	신일상사/오성관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5	협력점	주식회사 손잡이닷컴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6	협력점	삼화/테크노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7	협력점	사용중지/제일화방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8	협력점	알파인쇄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9	협력점	월드상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0	협력점	알파색채(주)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1	협력점	인천문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2	협력점	아톰상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3	협력점	대왕종합상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4	협력점	문화문기센타(양재)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5	협력점	우승오피스마트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6	협력점	안산공과대학구내지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7	협력점	대길복사문구(구:대길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8	협력점	모닝/대치은마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9	협력점	문구씨오엠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0	협력점	양지모닝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1	협력점	현대문구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2	협력점	카피어랜드(주)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3	협력점	알파기획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4	협력점	메가오피스(구:드림오피스/송파)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5	협력점	베스트문구/역삼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6	협력점	오피스클럽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7	협력점	씨앤비(디엠)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8	협력점	오피스알파(구:철산오피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9	협력점	글터문구센터/전농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0	협력점	A3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1	협력점	근영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2	협력점	삼화문구오피스 엄사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3	협력점	색연필/매탄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4	협력점	폴오피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5	협력점	유니차일드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6	협력점	인드림텍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7	협력점	(주)창이씨엔씨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8	협력점	삼화문구오피스 청사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9	협력점	오피스마루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0	협력점	파랑새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1	협력점	문구마루(본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2	협력점	알파플러스스카이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3	협력점	군자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4	협력점	명지편의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5	협력점	진광문구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6	협력점	알파프린텍(구:알파문구 커피컴온)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7	협력점	원시스템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8	협력점	더조은오피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9	협력점	함지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0	협력점	우리상공(주)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1	협력점	(주)문구샵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2	협력점	나라아트센터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3	협력점	알파전주종합상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4	협력점	분당2호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5	협력점	오피스토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6	협력점	모닝글로리/과천원문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7	협력점	진주NH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8	협력점	(주대경에프앤알(마테오팜))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9	협력점	오피스프라자/신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0	협력점	토탈오피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1	협력점	다인컴 네트워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2	협력점	알파오피스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3	협력점	주식회사오광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4	협력점	오피스비전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5	협력점	모닝문구/제물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6	협력점	주식회사 삼화문구몰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7	협력점	중앙문구서적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8	협력점	수(樹:나무)아래 경기도 북부청사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9	협력점	MG가톨릭관동대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0	협력점	썬프린트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1	협력점	칼라이미지테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2	협력점	홍익아트문구센터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3	협력점	삼화문구몰/세종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4	협력점	대전한국문구도매상사/SOMA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5	협력점	주식회사 삼화문구몰/SOMA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6	협력점	순수화방/SOMA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7	협력점	알앤비상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8	협력점	색연필/마포중앙도서관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9	협력점	주식회사 두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0	협력점	서울만물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1	협력점	굿모닝박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2	협력점	유어파트너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3	협력점	사용중지/평택삼성전자 문구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4	협력점	에스케이오피스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5	협력점	주식회사 보육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6	협력점	주식회사 삼정물류(구:페쓰)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7	협력점	로그인홍대점(구:쌍크빅/홍대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8	협력점	오피스박스 용산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9	협력점	위드오피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0	협력점	자바씨앤씨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1	협력점	화정한양문고(구:화정한양문구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2	협력점	주식회사에스닷대전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3	협력점	크린상사 하모니마트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4	협력점	알파물류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5	협력점	다다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6	협력점	부평역점/2호점(부평쌍크빅)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7	협력점	비케이오피스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8	협력점	아이마트 창녕2호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9	협력점	백령도할인마트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0	협력점	플래유미술학원(구:플래유/청담)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1	협력점	사용중지/대성문구사(육군사관학교)(A)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2	협력점	에스닷 대전시청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3	협력점	(주)한가람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4	협력점	주식회사 호미화방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5	협력점	대전제일화방문구(구:제일화방)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6	협력점	대성문구사(경찰청)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7	협력점	오피스웨이 (파주) 명성문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8	협력점	한일문구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9	협력점	대성문구사(육군사관학교)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0	협력점	수정문화사(신)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1	협력점	건영상사	사무용품,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2	협력점	신도유성사무기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3	협력점	백세유통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4	협력점	오피스라이프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5	협력점	북촌화실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6	협력점	(주)세원종합유통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7	협력점	피엔씨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8	협력점	(주)에스통상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9	협력점	자바씨앤씨(도매몰)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60	협력점	(주)미술킷커뮤니케이션(화방넷)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61	협력점	신양주서적문구도매센터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62	협력점	문구랜드(인천)	사무용품, 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1	온라인	11번가	https://www.11st.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	온라인	인터파크	http://www.interpark.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3	온라인	GS shop	https://with.gsshop.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4	온라인	롯데닷컴	http://www.lotte.com > 롯데온 통합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5	온라인	YES24	http://www.yes24.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6	온라인	텐바이텐	https://www.10x10.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	온라인	홈&쇼핑	https://www.hnsmall.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8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https://shopping.naver.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9	온라인	옥션	http://www.auction.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0	온라인	G마켓	https://www.gmarket.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1	온라인	위메프	https://front.wemakeprice.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2	온라인	쿠팡	https://www.coupang.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3	온라인	티몬	https://www.tmon.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4	온라인	롯데홈쇼핑	https://www.lotteimall.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5	온라인	현대홈쇼핑	https://www.hmall.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6	온라인	신세계몰	https://www.ssg.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7	온라인	다이소몰	https://www.daisomall.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8	온라인	CJ온스타일	https://display.cjonstyle.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19	온라인	하이마트	https://www.e-himart.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0	온라인	롯데온	https://www.lotteon.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1	온라인	보리보리	http://www.boribori.co.kr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2	온라인	카카오톡션 물하기	https://gift.kakao.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23	온라인	캐스팅엔	https://www.workmarket9.com	문구/사무/화방/소형가전/생활용품	상품공급가 다름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6%	3%	4%	7%

위 표의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브랜드별(알파, 오피스알파) 구분 기재가 불가능하여 총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40.2%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알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6조 1항 3호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품의 전시 및 노출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4호
○ [알파]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6조 1항 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상품 등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35조 1항 각호
2. 가맹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가맹운영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본부 품질관리 및 지도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분양몰사이트外 독자적인 온라인사이트를 운영 시 본사승인 없이 PB상품 등록 및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PB상품의 판매가격을 조정하거나 이미지를 변경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운용하는 POS 프로그램 설치를 권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7조 각항
2. 영업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가맹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기존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6.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 38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협의 후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체인사업팀 (02-3788-947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귀하의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최초 가맹비의 일부금이백이십만원(2,200,000원)(VAT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 POS설치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 완전한 계약기간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최초가맹금(가맹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및 POS설치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사실 통지 후 본사 승인 (소요기간 3일 이내)	POS설치교육에 관한 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직계존비속 (부부포함)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일한 동종의营업을 하지 않는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통일적인 홍 보물 등의 디 자인, 시안 등 의 제작비용 등은 당사가 부담함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 인비용이나 직접 제 공하는 경품·기념품· 팸플렛·전단 등의 홍 보물 등의 비용은 가 맹점사업자가 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광고 → 사후결과 공고	월별 판촉 행사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당 가맹사업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가맹계약서 제38조 제3항 및 제4항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 일방적 해지 · 중단 · 종료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일금 일백만원(W1,00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2) 가맹계약서 제42조[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0p~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7일)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별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알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알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일	990	POS/모바일설치교육비
수시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진행	실비(가맹점사업자 부담)	
특별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진행	실비(가맹점사업자 부담)	

* 위 신규 교육비용은 귀하가 타 회사의 POS를 사용할 경우, 당사 프로그램 설치 교육에 따른 비용입니다. 당사로부터 POS를 구입하여 설치시 구입비용에 교육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다만 POS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실시되는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가맹점사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으나, 교육 미

이수에 따른 업무 처리의 불편사항에 대해 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31년 4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5,345,029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끝—

[별첨] 3 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가맹점

구분	상호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상기와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일자 : 20 년 월 일

가 맹 본 부 : 알파주식회사 (인) 또는 서명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별첨]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설명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충분히 설명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충분히 설명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4: 비밀 유지 약속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 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제 공 일 자 :	
수 령 장 소 :	
수 령 자 주 소 :	
전 화 번 호 :	010-
수 령 자 :	(서명 또는 인)
가 맹 본 부 :	알파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